

## 일본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최근 동향

(Current improvement of Japanese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in Japan)

김 한 수

대한전기협회 법령연구실장

### 머리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나 재해방지, 생산 및 소비의 합리화와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를 책정하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각 분야의 정책 목적 달성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관련분야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대와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WTO/TBT 협정 등 국제적 개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자유경제 사회를 목표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제품 안전(Safety)과 산업 보안(Security)의 확보, 경제행위의 적정화 등 본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가 갖는 목적의 달성을 전제로,

- 관·민의 역할분담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었는가?
- 민간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되어 있는가?
- 민간사업자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환경정비가 행하여

지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 산하에 기준·인증 부회를 설치하고, 1998년 6월부터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기본방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왔다. 나아가 중요한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심의회 등과 협동으로 아래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 방향을 심의하여 왔다.

- 소비경제심의회, 제품안전부회
- 고압가스 및 화약류보안심의회
- 종합에너지조사회, 도시열에너지부회
- 전기사업심의회, 기본정책부회

본고에서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상기의 협동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통합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건의한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대한전기협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전기 사업상의 기술기준 및 제도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정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는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나 재해방지,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와 효율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공업제품 등의 물자나 시설 또는 설비를 충족시켜야 할 기술기준과 당해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適合)성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법령 등으로 정하는 것이다.

- 경제산업성 소관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에는
- 텔레비전, 전기세탁기 등의 전기용품, 가스 순간온수기, 가스난로 등의 가스용 제품, 또는 유아침대나 스포츠용품 등,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전반을 규제하는 제품안전규제
  - 전기공작물, 가스공작물 또는 고압가스설비 등을 규제하는 산업안전규제
  - 계량기기 등 경제거래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있다.

한편, WTO/TBT 협정의 부속서 1 용어 및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이라 함은 적용 가능한 행정요건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하며 그것의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 표준(Standard)이라 함은 규칙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것의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ment Procedure)

라 함은 기술기준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적합성평가절차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적합성평가와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ISO/IEC 가이드 2에서는 표준의 정의를 상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TBT 협정에서는 상품 또는 공정 및 생산 방법과 관련한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만을 취급한다. ISO/IEC 가이드 2에 정의된 표준은 강제적일 수도 자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TBT 협정에서는 표준은 자율적인 문서, 기술기준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하였다. 국제표준화기관이 발행하는 표준은 콘센서스(Consensus)에 기초하나, TBT 협정은 콘센서스에 기초하지 아니한 문서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정의를 비교하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기술기준 및 표준에 대한 정의는 WTO/TBT 협정의 용어 및 정의를 기초로 그들의 소관업무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2.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여건 변화와 사회적 요청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는 공공의 복지 실현에 관계되는 것과 적합성평가의 객관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일본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신기술 도입이 진행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품질관리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제품안전 분야 또는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자주적 안전대책을 위한 대처방안의 확충 등을 통하여 사고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에 관한民事法의 정비, 제품의 소비자 및 시설주변 주민 등에 대한 보급,

계발 등의 정보제공의 충실, 제품 및 시설에 관한 안전성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제적으로 개방되어야 할 일본사회는 자기책임원칙과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한 자유로운 경제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술기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의 정책목적은 제품안전 또는 산업보안에 대한 안전레벨의 유지·향상을 전제로 하면서 정부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최소한의 범위 및 내용으로 국한하여 시장의 각 주체가 각자의 책임과 의무 및 역할에 준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경제글로벌화 등을 배경으로 세계규모의 대경쟁(大競争)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고(高)비용 경제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정세를 배경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경제 기반을 확립하여 풍족한 국민생활 실현의 요구가 총족되도록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경제글로벌화와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WTO/TBT협정)’이 1995년에 발효되었고, 또한 유럽연합(EU) 등과의 사이에 상호인정협정(MRA)이 진행되는 등 기존의 일본 기술기준·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기준 및 인증 제도를 국제정합화(International Harmonization), 간소화(Simplification)하는 등 시장 접근(Access) 향상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보호 등에 관한 정책목적 실현을 전제로 기존의 일본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부전체의 입장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아래와 같은閣議 결정이 이루어졌다.

## 가. 경제구조개혁 추진계획 시행확인(Follow-up) (1997년 12월 각의 결정)

제품의 제조, 설비·시설의 구조·설치에 관한 기술기

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 정부의 규제는 본래의 정책목적에 맞게 필요한 최소화한다.
-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活力을 활용하는 제3자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구축한다. 또한, 중복검사를 배제하는 효율적인 적합성평가제도의 구축을 도모한다.
- 기술진보에 보조를 맞추어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한다.
- 국제정합성을 배려한 시스템으로 한다.
- 제품안전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보험 가능한 범위에서의 활용과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의 안전대책에 자주적 조치를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상기의 어느 관점에서도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 등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나.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1998년 3월 각의 결정)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 자기확인, 제3자 적합성평가로의 이행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 적합성평가절차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 적절한 경우에 있어서 기술기준을 성능 규정화한다.
  - 국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한다.
- 등을 기본방침으로 재검토를 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상과 같이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는 국내적, 국제적 관점에서 개선이 급선무이며, 아래와 같은 방향을 목표로 재검토를 하였다.

- 각 제도의 정책목적인 제품안전 또는 산업보안의 안전레벨을 유지·향상하는 데에 기여한다.
- 관민의 역할분담을 재검토하여 정부의 과잉규제, 절

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고(高)비용 구조의 시정(是正)에 기여한다.

- 정부 또는 공익법인만이 제도운영의 독점적 주체로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민간능력의 활용 등으로 제도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한다.
- 민간 사업자의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장려하여 산업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국제적 동향을 배려하여 사업자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환경정비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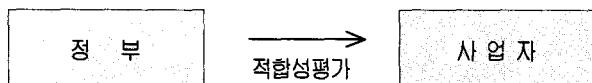
### 3.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의 정리 및 모델화

일본의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의 기본방침을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가 대상이 되어야 할 범위 및 절차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개별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의 기술기준·적합성평가 제도를 정리하여 모델화하는 재검토 기본방침을 토대로 제도가 갖추어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적합성평가절차와 기술기준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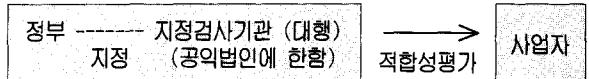
#### 가. 적합성평가절차

일본의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절차의 타입을 아래의 5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 (1) 타입 I. 정부가 실시주체가 되는 적합성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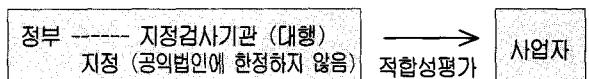


##### (2) 타입 II. 정부가 지정검사기관(공익법인에 한함)에 권한을 위임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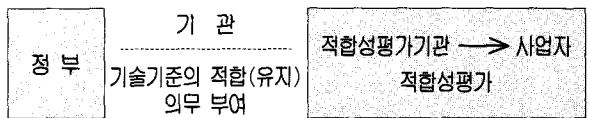
\* 정부의 지도감독하에 정부의 적합성평가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검사기관(공익법인에 한정)에 대행시키는 것.

##### (3) 타입 III. 정부가 지정검사기관(공익법인 불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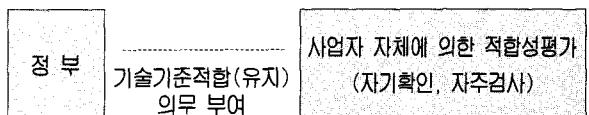
\* 타입 II의 적합성평가에서 지정기관을 공익법인 요건을 폐지하여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민간검사기관의 참여를 인정하는 것.

##### (4) 타입 IV. 제3자 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 절차



\* 정부는 적합성평가를 하지 않으며 사업자에게 제3자의 적합성평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것.

##### (5) 타입 V. 사업자 자체에 의한 적합성평가 절차



\* 정부는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업자 스스로가 적합성평가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자가 임의로 제3자 기관의 검사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사업자를 인정하여 자주검사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타입 V는 다시 사업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유지)의무 부여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모델을 재 유형화할 수 있다.

타입 Va : 사업자에게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확인 또는 자주검사의 실시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것

타입 Vb : 사업자에게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유지)의무 민을 부과하는 것

위에서 말한 모델 가운데 타입 I부터 타입 III까지는 정부에 의한 적합성평가로서 정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는 정부 스스로가 적합성을 평가하는 타입 I부터 시작되었으나 민간능력의 활용

과 행정의 슬럼화 등의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타입Ⅱ의 적합성평가 모델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많은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있어서 타입Ⅱ 모델의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고압가스보안법 등에서도 서비스 질의 향상, 사업자에 의한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타입Ⅲ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안전분야는 법 제정시부터 타입Vb 모델이 적용되어 왔다. 제품안전 분야는 민간능력의 향상 등을 근거로 1960년대 후반부터 타입V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타입V 모델에 의한 적합성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행의 제품안전 분야는 타입Ⅱ와 타입V의 조합이 많다.

산업보안분야는 타입Ⅰ과 타입Ⅱ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에 타입Ⅲ 및 타입V가 도입되어 있는 분야와 타입V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분야 등 규제대상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타입IV는 유럽과 미국에는 일반적인 제도이나 일본에 도입된 실적은 없다. 타입IV를 도입하면,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경쟁원리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품질 높은 검사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기술기준

일본의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바, 안전에 필요한 성능을 규정한다는 관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기술기준의 타입은 추상도(抽象度)에 따라 아래의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타입 A : 일반적인 안전의 요구

타입 B : 제품 또는 시설별로 구조, 내열성, 절연성 등에 대하여 충족시켜야 할 필요사항만을 규정하는 것

타입 C : 구체적인 수치가 요구되는 성능수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능을 실현하기 위한 재질 또는 구조 등의 시방에 제한이 없는 것

타입 Ca : 요구되는 구체적인 성능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평가방법의 규정이 없는 것

타입 Cb : 위의 요건에 추가해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성능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평가방법까지 규정한 것

타입 D : 요구되는 성능수준을 실현하기 위한 재질 또는 구조 등의 시방을 규정하고 있는 것

현재의 제품안전 및 산업보안에 대한 기술기준은 주로 타입B~D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전기설비 등 산업안전의 일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걸쳐 타입B의 성능규정화가 시행되고 있다.

## 4. 기술기준·적합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여기에서는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재검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가. 안전확보 등의 정책목적 달성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는 제품안전이나 산업보안의 확보, 경제행위의 적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이 달성하여야 할 기술기준의 설정,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재검토는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민간의 능력향상에 기초하여 정부의 관여 정도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 규제시스템 구축(構築)을 도모하는 것이며 제도가 갖는 목적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은 안전레벨을 끌어내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책목적의 달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 나. 적합성평가절차(정부의 직접적 관여의 최소화)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있어서 안전확보 등의 정

책목적은 본래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기술능력 향상 및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의 향상 등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의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 및 내용으로 하자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와 같이 사전규제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정부는 물자의 생산, 유통, 설치 또는 사용할 때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본 규칙을 책정하고, 그 기본규칙 하에서 안전성의 확인 등을 민간 사업자에 위임하여 사후조치를 적절하게 또한 기동성 있게 발동하는 것과, 소비자 등으로의 정보제공 등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여, 그 역할의 구심점을 옮겨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법령에서는 제품의 생산, 유통이나 설비·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에, 정부의 행정권한 아래 개별 검사(Inspection) 및 검정(Qual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요건은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이므로 법률에 근거하는 지정기관에 위탁하여 이들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대행으로 지정된 제3자 기관의 능력 향상 또는 이들과 동등한 능력을 갖는 민간의 적합성평가기관 등이 多數 시장에서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태 등을 토대로 민간능력을 활용하면 정부가 직접 적합성평가 행위를 수행하지 않아도 안전레벨의 유지 및 향상 등의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적합성평가절차 타입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관여를 필요 최소화한다는 개념에서 지금까지 정부 또는 지정 대행기관만이 수행해 온 검사·검정 등의 적합성평가행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민간이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제품안전 또는 산업보안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시설에 기인

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영향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규제대상 분야를 모델화하고, 아래와 같은 개념의 원칙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 확보 이외의 목적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정책목적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① 제품 또는 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의 영향 정도 또는 사고발생의 개연성 등을 토대로 안전 확보상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것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규제를 필요로 할지라도 민간사업자의 능력 향상 및 타입V의 자기 확인 또는 자주검사로서 수행하여 온 과거의 적합성평가실적 등에 입각하여 사고 발생시 영향 정도가 한정적인 경우 또는 사업자의 안전 확보 능력이 높아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기 확인 또는 자주검사에 의한 타입V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구나 이 경우 제품안전 분야에 있어서 제조업자 등이 기술기준적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의 담보(擔保)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 보존을 의무화하는 타입Va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설치자가 스스로 시설을 운용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에 대하여는 타입Va로 하도록 한다.
- ③ 잠재적인 위험의 크기 등으로 사업자가 중립적인 민간 제3자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타입IV를 도입하도록 한다.
- ④ 사고시 영향의 정도가 극히 큰 분야에 대하여는 정부에 의한 적합성평가 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지정대행 기관에 개방하는 타입III의 도입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적합성평가를 가능한 한 민간기관이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이행(移

行) 할 때에는 사업자 등에게 자기책임 원칙을 철저하게 시킨다는 관점에서 제품 또는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검사기록 등의 서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의 서류작성 및 보존 등에 대한 의무화의 실태, 일본에서의 제조업자 또는 시설설치자 등의 문서관리의 현황을 감안하여 제조업자 또는 시설설치자 등의 부담도 배려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 다. 검사(Inspection) 및 검정(Qualification) 등에 제3자 기관의 활용

적합성평가절차에 있어서 제품안전 분야는 정부에 의한 적합성평가품목이 대부분이고, 산업안전 분야는 정부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 시설의 일부에 제3자 기관이 대행하도록 지정하여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현재 검사·검정 등을 수행하는 정부의 지정대행기관은 공익법인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칙 (ISO/ IEC 가이드)이 개발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와 독립된 조직이 제3자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여, 민간 영리법인도 제3자 기관으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민간검사기관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부대행성(代行性)의 유무를 불문하고, 민간 제3자 검사기관의 인정 또는 대행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는 검사·검정 등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능력 및 중립성 등의 일정한 요건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있어서 공익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검정 등의 업무에도 민간능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화, 검사·검정 등의 서비스 질의 향상 또는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3자 기관에 대한 적절한 요건을 정하여 인정 및 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 기관의 인정·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으로서는, 그 인정·지정에 관한 투명성 확보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규칙을 토대로

- 검사원의 능력과 인원수, 검사설비 등에 대한 기술적 능력
- 배상능력 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資金的 기반 등의 재정적 기초
- 임원 구성, 자본의 독립성 등에 대한 중립성, 공정성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3자기관이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가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라.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의 촉진

현행의 제품안전 분야 및 산업안전 분야에는 제품 또는 시설이 확보하여야 할 안전레벨에 관한 기술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구조 등의 시방이나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신기술을 도입하여 제품 또는 시설을 개발하여 안전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해도 기술기준이 이들의 시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 소위 「시방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시방, 시험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당해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거나 개별적인 설계의 인가 등에 대한 기술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기술진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제품의 제조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다양화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기술 혁신 인센티브를 장려하여 안전레벨을 향상시키고 산업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품안전 및 산업보안 분야에는 필요한 안전 수준을 구체적인 수치 및 구조 등으로 제약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로서의 의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항들을 토대로 기술기준에 대한 요건 중 시방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성능규정화를 촉진하여 앞서 기술한 타입B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안전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타입C 또는 타입D로 규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기술기준을 성능규정화할 경우, 요구되는 성능이 충족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기술기준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하다. 따라서 기술기준을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표준이 필요하며, 정부가 해당 내용의 해석을 만들어서 민간사업자 및 제3자기관 등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기술기준을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표준은 정부가 제시하는 해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으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의 제시에 있어서 적절한 JIS, 민간표준 및 외국표준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마. 국제적인 상호인정협정(MRA)의 추진

경제 글로벌화에 수반하여 제품 및 부품 등 무역재(貿易財)(이하 「제품 등」이라 함)의 국제적인 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시장접근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조화(整合性)를 배려함과 동시에 기술기준·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하여도 제품 등의 국제적인 유통을 쓸데없이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EU 등과의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품 등에 대하여 설정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평가절차가 상이한

경우일지라도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한 제3자 기관이 수입국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수입국내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와 동등하게 보증받도록 하여 이를 서로 수용하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 진행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함으로써 제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등은 제3자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모두 자국내(수출국 측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대국에 대한 시장 접근이 용이해져 무역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제품 등을 입수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일본 제품안전 규제법령 등에는 일부 제품 등에 정부 또는 지정된 대행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외국의 제3자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결과를 받아들여 국내시장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러 외국이 용이하게 적합성평가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의 제3자 기관의 지정방법에 대한 중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사업자의 글로벌 활동에 대하여 국제적인 상호승인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장 접근 향상을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상호승인에 대한 실태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모든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바. 사후조치의 확충

제품안전 및 산업보안 분야에서는 사전규제 합리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기 확인 또는 자주검사의 기본방침제도로 이행(移行)하려면, 사업자에 대한 보고징수, 입회검사, 개선명령 및 제품의 회수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확충 및 정비하고 동시에 적절하고 기동적인 활

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안전에 대해 대처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안전레벨을 한차원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도구로 별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범인인 사업자에 대한 벌과금의 상한이 경제실태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다. 정부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기책임원칙에 기초한 안전 확보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하여, 억지력을 강화해 감으로써 필요한 것에 대한 벌과금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품안전 및 산업보안분야에 있어서는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며, 각 주체가 스스로의 책무 또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다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안전 확보 체계는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안전확보 대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정부, 사업자 및 관계단체 등이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보급, 계몽이 알차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 등이 파악한 사고정보나 리콜정보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정보제공에 대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개시(開示)를 하는 등의 체제정비도 필요하다.

제품안전분야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의 제정, 민사소송법의 개정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새로운 민사 규정이 도입되는 한편, 재판의 분쟁처리기관 및 손해 전보(填補) 조치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진행시키

기 위한 환경정비에 추가하여 제조업자 등의 자주적인 안전대책이나 소비자 등에 대한 제품사고 정보의 제공이 기대된다.

## 5. 향후 일본의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의 기본 방향

지금까지 경제산업성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가. 경제산업성 소관의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제도

기준인증부회의 심의회에서 다른 심의회 등과 합동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정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별첨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 별첨 1. 제품안전합동소위원회 보고서
- 별첨 2. 가스안전합동소위원회 보고서
- 별첨 3. 고압가스 및 화약류보안합동소위원회/분과회 보고서
- 별첨 4. 전기안전문제검토합동소위원회 보고서
- 별첨 5. 기타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검토 보고서

기준인증부회가 다른 심의회 등과 합동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이 5개의 별도 보고서를 만들면서 경제산업성 소관의 별첨 5. 기타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 계량법
  - 항공기제조사업법
  -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열공급사업법
- 등에 관련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절차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아이템으로 제시하였다.

## 나. 일본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 전반

이상에서 기술한 사회정세 변화를 토대로 한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기본 개선 방향을 경제 산업성이 소관하는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모든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 개방된 경제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모든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이 기본방향에 준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또는 재해방지, 생산·소비의 합리화 및 효율화 등의 목적을 위해 기술기준·적합성평가제도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역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 관민의 역할분담의 적정화
- 검사·검정 등의 업무에 민간능력을 활용
- 사업자의 기술혁신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제도 도입
- 국제적인 상호인정협정 추진

등의 관점에서 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이것을 각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을 수준을 유지·향상하는 전제로 건의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이번 개선이

- 기술기준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보존의무 부여 등 사업자의 자기책임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안전 확보 시스템의 충실
  - 민간 제3자 기관의 활용에 의한 검사서비스 등 질의 향상
  - 관민의 역할분담 적정화에 의한 사후조치 확충
- 등의 조치로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재검토에 의해서 도입하려는 민간 제3자 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제도는 일본의 규제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며, 제3자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적

절하게 관여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요건의 상세한 검토 등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인정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제3자 인정기관을 정부가 인정함에 있어서 민간인정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는 예도 있으며, 일본에서도 인정대상이 되는 민간 제3자 기관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활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는 정책목적의 달성을 감안하면서 끊임없이 Check and Review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이 과도기적 조치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개선후의 안전수준 등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안전수준을 평가 및 확인하고, 제도의 본연의 상태 그 자체를 포함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후의 시행에 있어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도의 보급, 계몽 등을 실시하여 이번 개선에 근거한 제도변경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된 일본의 경제산업성 소관의 11개 법령에 관계되는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전기사업법상의 기술기준 및 제도의 국제화 프로젝트도 먼저 산업자원부 소관의 관계법령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전기사업법상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작업을 하여야. 관계법령사이에 중복되는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배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국제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